##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93

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 황정아·김남근·황명선

윤호중 • 조인철 • 박용갑

김성회 · 임광현 · 백승아

최민희 · 서미화 의위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.

그런데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비 집행의 중요한 사항이라 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8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
-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대학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3조(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 | 제13조(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     |
| 용 등) ① ~ ③ (생 략)   | 용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  |
|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    | <b>4</b>               |
| 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개발비를 계상·사용하여야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한다.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~ 3. (생 략)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4.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조정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|
| <u>4.</u> (생 략)    | 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 |
| ⑤ ~ ⑦ (생 략)        |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제4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대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한다.</u>             |
| ⑧ (생 략)            | 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  |